

# 정 관

제정 2001년 9월 29일

등기 2002년 3월 4일

개정 2003년 3월 6일

개정 2015년



(사)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

# 제1장 총칙

## 제1조 명칭

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(이하 '본 협회'라 칭함)라 칭한다. 영문 표기는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- Korea Chapter로 한다(약호 ISACA KOREA CHAPTER).

## 제2조 목적

본 협회는 정보기술(이하 IT)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 및 그와 관련된 경영자문에 관한 회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고 개발함으로써 회원들이 소속된 각 조직, 기관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그에 따른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사무소

- ①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,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③ 사무소, 지부, 지사무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## 제4조 사업

본 협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.

- ① IT 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 및 그와 관련된 경영자문활동과 관련한 회원의 교육 및 지원
- ② IT 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과 관련된 전문가 시험의 대비과정 개설 및 교육, 학술연구 용역
- ③ IT 감사기법 및 접근 방법에 대한 회원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표
- ④ IT 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과 관련된 전문서적의 발간, 외국서적 번역
- ⑤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조직에 이익이 되는 IT 감사와 관련된 행사추진
- ⑥ IT 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교육
- ⑦ 제증명 교부업무 및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
## 제2장 회원

### 제5조 회원구분 및 자격

- ① 회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회원, 준회원,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1. 정회원 : 3년 이상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한 개인
  2. 준회원 : 3년 미만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한 개인
  3. 법인회원 : IT 거버넌스, 감사 및 통제, 보안 관련 단체, 학교, 연구소, 기업체 등
- ② 회원자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발생하며, 회원 스스로 탈퇴하거나,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명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③ 회원 자격에 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(본 협회의 모기관인) 국제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(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)(이하 '국제협회'라 칭함)의 Chapter Bylaws 규정(별첨)을 준용할 수 있다.

### 제6조 권리와 의무

-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1. 정회원은 본 협회의 회장, 감사 등 제9조 제1항의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2. 정회원, 준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본 협회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는다.
  3. 회원은 제2항에서 정한 회원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제반권리를 갖는다.
-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1.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2. 총회 결의사항 이행
 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### 제7조 탈퇴 및 기간 연장

회원은 가입 후 매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, 연장할 때마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되며, 임의 탈퇴를 원할 경우 본 협회에 요청하여 탈퇴 할 수 있다.

## 제8조 포상 및 징계

-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원

### 제9조 임원 및 고문단

- ① 본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, 감사 1명, 부회장 및 이사를 둔다.
- ② 본 협회에 고문단을 두며, 역대 전임회장 및 회장은 고문단의 위원이 된다.
-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수는 이사회 및 고문단 의결로 정한다.
- ④ 회장은 각 이사를 보좌할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임원의 선임

-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,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② 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고문단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장 및 감사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, 총회에서 출석회원 1/3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③ 회장,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고문단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임원 궐위 시, 회장은 궐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 임원의 해임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 제12조 임기
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.
-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연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감사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1년이고, 연임이 가능하다.
- ④ 임원의 궐위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출 시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## 제13조 임원의 직무

- ① 회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1.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이 되며, 이사회 통제 하에 본 협회의 업무를 지휘, 감독, 통제한다.
  - 2. 회원의 모든 회의를 관장한다.
  - 3.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고, 회장의 직책에 부여된 일반적 권한 직무 및 관리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감사는 제15조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부회장이 담당하는 부문의 소속 이사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④ 이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  - 1. 본 협회의 법률적 문제, 보고서, 회원의 기록 및 신규회원가입 신청 검토
  - 2. 본 협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이사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지출
  - 3. 본 협회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
  - 4. 본 협회 출판물 출간
  - 5. 본 협회의 국내외 홍보, 교류 및 제휴
  - 6. 국제 ISACA 본부 및 지부와 서신교류 및 Communication
  - 7. 대외적인 학술행사의 기획 및 개최
  - 8. 기타 이사회, 회장, 부회장이 위임한 업무 등

## 제14조 회장 및 감사 직무대행

- 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직무 대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회장 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 유고 시에는 회장이 고문단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사직무 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, 제10조에 따라 감사 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.

다.

### 제15조 감사의 직무

- ①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1. 본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
  2. 이사회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
  3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·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장에게 보고
- ②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에게 이사회·총회·고문단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감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원, 간사, 사무국 직원 및 회원에게 의견의 진술, 장부의 열람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를 요구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제4장 총회

### 제16조 총회의 기능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·직무정지·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승인
- ③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⑥ 중요 사업계획의 승인
- ⑦ 기타 총회에 부여된 사항 등

### 제17조 소집 및 공고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총회의 개최가 결의된 즉시 총회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회의 개시 14일

전까지, 임시총회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(긴급 시에는 3일전까지), 문서 또는 회원이 본 협회에 사전에 등록한 전자통신수단(이메일, 메신저, 전화 등)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단, 이메일의 경우에는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).

-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만일 회장이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1.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  - 2. 제15조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  - 4.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, 고문단 또는 임원 중 2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
- ⑥ 제5항의 규정으로 소집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 제18조 의결 정족수

-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총회에 부의된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것에 한한다.
- ④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총회 안건에 대하여, 총회 개시 24시간 전까지, 본 협회에 사전에 등록된 본인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신하거나 전자서명 된 문서를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의 출석회원에는 제2항에 의한 위임장 제출 회원과 제4항에 의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을 포함한다.

##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 제5장 이사회

## 제20조 이사회 구성

이사회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21조 이사회 기능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⑦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⑧ 이 정관 및 협회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

## 제22조 이사회 소집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임원이 사전에 본 협회에 등록한 전자통신수단(이메일, 메신저, 전화 등)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단, 이메일의 경우에는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).

##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만일 회장이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제2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1.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
- ② 제1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 제24조 서면결의
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서면 결의할 사항에 대하여, 재적임원 과반수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



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**제2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**

- ① 이사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## **제6장 재산 및 회계**

### **제26조 수익금의 구분**

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연회비
- ② 도서판매 대금
- ③ CISA 수험강좌 대금
- ④ 세미나 등의 개최 참가비
- ⑤ 기타

### **제27조 회계연도**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**제28조 사업보고**

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·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### **제29조 보수**

- ① 임원·간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도록 이사회에서 지정한 임원·간사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 직원의 보수(성과급 포함)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## 제7장 보칙

### 제30조 본 협회의 해산

-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.
- ② 본 협회의 해산 시에는 국제협회에 해산사유를 첨부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.
- ③ 본 협회가 해산 할 경우 순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 기탁한다.

### 제31조 정관개정

- ①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, 고문단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.
- ②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회장의 임기를 개정할 경우, 개정 당시의 회장의 임기는 개정 前 조항에 따른다.

### 제32조 기타 의결정족수

이 정관 및 본 협회 관련 법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, 고문단 회의 등 본 협회 관련 회의 등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### 제33조 기타사항

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관련 법규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